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목 차

I 고시 해설서의 법적 근거

- | | |
|-------------|----|
| 1. 법적 근거 체계 | 06 |
| 2. 관련 법령 | 07 |

II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 | | |
|-------------------|----|
| 1. 학생생활지도 개요 | 14 |
| 2.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사항 | 15 |
| 3. 학생생활지도 지원 | 16 |
| 4. 학생생활지도 관련 문의방법 | 17 |

III 고시 해설 및 지도요령

- | | |
|--------------|----|
| 1장. 총칙 | 20 |
| 2장. 생활지도의 범위 | 39 |
| 3장. 생활지도의 방식 | 48 |
| 1. 조언 | 48 |
| 2. 상담 | 50 |
| 3. 주의 | 55 |
| 4. 훈육 | 58 |
| 5. 훈계 | 80 |
| 6. 보상 | 83 |
| 4장. 기타 | 84 |



I

고시 해설서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체계
2. 관련 법령

I. 고시 해설서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체계**



법적 근거 마련의 의의

- ▶ 초·중등학교의 교원이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포함됨
- ▶ 상위법에서 정한 바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행위는 위법임(‘상위법 우선의 원칙’)
- ※ 학급규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칙은 고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음

2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2023.9.27.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 (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 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2023-28호, 2023.09.0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개정 예정**)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II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1. 학생생활지도 개요
2.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사항
3. 학생생활지도 지원
4. 학생생활지도 관련 문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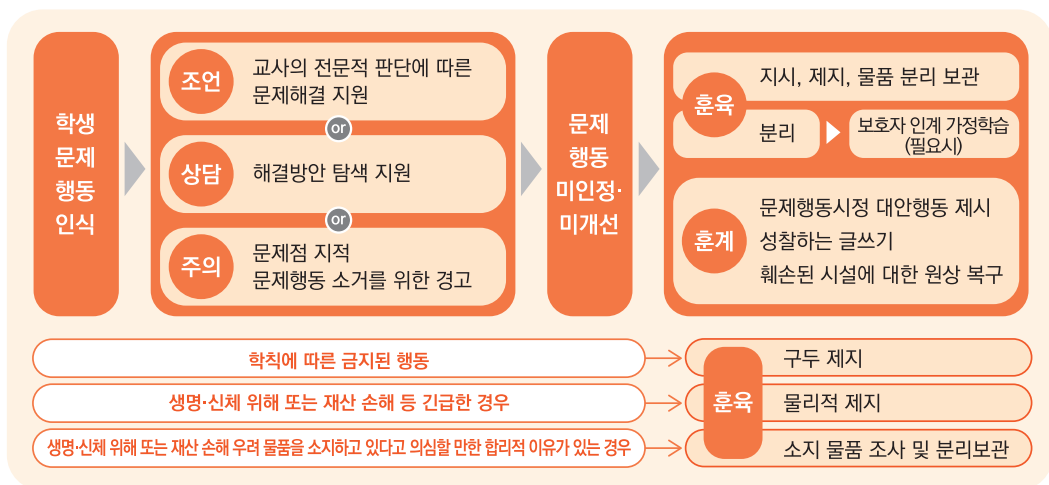
II.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안내

1 학생생활지도 개요

가.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법



나. 문제행동에 대한 생활지도 절차



2 고시 해설서 활용 유의사항

- 이 해설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 고시에서 규정한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의 기준에 대해 상세 해설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이 해설서는 최근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2023.9.1. 제정 및 시행)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전 영역을 고시 내용, 해설, 지도요령 순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 해설서에서 제시하는 예시는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장소·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초·중등 개별학교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에서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지도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각 지도방식에 관한 정의, 실시 요건, 예시 등을 설명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요령 및 관련 판례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 해설서에서 제시하는 ‘관련 판례’는 유사 사례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사례별로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사례에 대하여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학생생활지도 지원

교육부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확립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및 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 판단이 어려운 법령 및 고시 적용상의 해석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지원

시·도교육(지원)청

- 법령과 고시의 범위 내에서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청 지침 등 현장 적용 및 초·중등 학교급별 연수 지원
 - ※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등에 대한 표준안 마련, 고시 적용 등 연수 지원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제반 학교 여건(분리 장소, 지원인력, 비상 연락 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 ※ (예) 퇴직교사를 활용한 긍정행동지원가(서울시교육청) 등 인력 활용, 학생 교육시간 중 활용이 저조한 민원상담실 등을 분리 장소로 겸용하는 방안 등
-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상충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조례를 정비

학교장

-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원의 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한 제반지원 사항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지원
 - * (예) 교직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주기적인 애로사항 청취, 학교예산 편성시 학생생활지도 지원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보조인력활용, 분리 공간 구축 등 예산 적극 편성, 학칙 적시 제·개정
- 학교구성원에 대하여 고시 내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연수 추진, 단위학교 총괄책임자로서 담임교사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대책 수립 등

4 학생생활지도 관련 문의방법

문의방법

▶ 학교에서

- 단위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에 질의함
-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해석에 대한 질의는 직급 상급 행정기관에 하여야 함
(단위학교 →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에서

- 단위학교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 초·중등 생활지도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답변함
- ※ 원활한 학교현장 지원을 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에서

- 교육지원청의 질의(서면, 전화, 인터넷) 내용에 대해 성실히 응대하되, 자체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경우 교육부 해당부서에 문의함
- 시·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로 질의함

유의사항

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 관한 내용에는 다양한 교육 정책(학생인권 및 학칙개정,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의 해당업무 담당 부서로 질의함



III

고시 해설 및 지도요령

1장. 총칙

2장. 생활지도의 범위

3장. 생활지도의 방식

4장. 기타

1장 총칙

1 목적

관련 조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이 고시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지침과 학생의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 3주체 (학생·학교의 장과 교원·보호자)의 책무 등이 규정됨
-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분야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 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이 있음

지도요령

-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생활지도는 이 고시의 적용을 받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이 고시의 범위 내에서 학생생활지도를 하여야 함
- 이 고시의 내용은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이 되며, 이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행위임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예시〉

- 법령에 의한 행위
 - 형의 집행
 - 범인에 대한 체포행위
- 업무에 의한 행위
 - 의사가 환자의 다리를 절단
 - 감염병 환자의 격리 조치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 ④ 긴급성
 - ⑤ 해당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

[관련 판례] 정당행위의 요건 및 사례

- ▶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98도2389 판결, 2001도5380 판결 -

참고

- “학교의 장”이란 「초·중등교육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장의 임무를 부여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교원을 말함
 - 학교의 장 또는 교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사람, 학교에서 일시적으로 교장 직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교직원을 포함한 개념임
 -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총칭함
 -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의 자격을 갖추고 교사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소속 학교에서 그 임용형태(기간제, 시간제 등), 담당과목, 담당직무(보건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와 무관하게 동일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부여받음
-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이하 ‘산학겸임교사 등’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서 교원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원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학교의 장과 교원을 보조하여 생활지도에 참여할 수 있음

2 정의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일체의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해설

-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에 학적(學籍)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함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되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함
- 교육활동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됨

〈교육활동의 구체적 사례〉

-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의 활동
 -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의 활동
 -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의 활동
 -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 체험, 직장 견학 및 현장실습 등 시간의 활동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의 활동
 -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의 활동
- 학생생활지도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로서, 법령의 근거가 있는 합법적인 지도 행위임
 - *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학교폭력, 위해·위험요인 등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 등 학생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의 정의는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생활지도와 달리, 생활지도의 주체, 시기, 지도 범위, 방법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음

〈법령 및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 (주체) 학교의 장과 교원
- (시기) 교육활동 과정 중으로서 고시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활동*을 하는 동안을 의미함. 다만, 고시 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전에 협의된 일시 및 방법에 따른 상담은 교육활동 과정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음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
- (지도범위)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고시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그 지도범위를 정하고 있음
- (방법) 학생생활지도는 징벌이 아닌 "지도 행위"임을 분명히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3에 의한 생활지도 방법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지도방식을 고시 제3장에서 정하고 있음

- 조언 :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로서, 당사자에게 대면하여 전하는 말과 글뿐만 아니라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형태를 모두 포함함
- 상담 : 학생생활지도로서의 “상담”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 활동임
 - 학생의 문제가 애착이나 외상 사건 등 발달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결과로서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을 권장할 수 있음
- 주의 : 학생 행동의 결과로 위험 및 위해가 예측되거나 법령 및 학칙을 위반하게 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그 행동에 대한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말과 글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주의가 있을 수 있음
- 훈육 :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위하여 학생 행동을 중재하는 적극적인 지도 행위로서,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의 한 방법임

〈고시에서 정한 훈육 방식〉

- (지시)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제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 등을 학생에게 중지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말에 의한 제지와 물리력을 사용하는 물리적 제지로 구분될 수 있음
 - (분리) 학생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적 위치에서 학생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다른 좌석이나 위치, 장소로 이동하여 머무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소지 물품 조사) 학생이 특정 물품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는 행위
 - (물품 분리보관) 학생이 소지한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특정 장소에 일정 시간 내지,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미함
- 훈계 :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로서, 말과 글을 이용하거나 훈계 사유와 관련된 과제 부여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깨닫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보상 :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로서, 칭찬, 상점, 상장, 상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지도요령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학교장 및 교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설치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함
-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학생생활지도와 지도 방법 및 방식에 용어 정의는 일상적인 어휘가 가진 의미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장 및 교원은 이를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보상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며, 일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함

참고

• Q&A

Q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의해 설립된 학교도 이번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이 적용되나요?

A

이번에 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만 적용이 됩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이 고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Q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교무를 총괄하므로 학생 분리지도 등에 대한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전문상담사 등 교직원(학교장이 인정한 교육활동 보조 인력 등)에게 분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상담사도 학생생활지도에 부여된 임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정당한 생활지도란 무엇이며, 고시와 학칙에 따라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하였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A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의 위임에 따라 정한 학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써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의거 별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법령·고시·학칙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고시가 정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하고 있는 학칙에 근거하여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이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해설

- 교육 3주체 :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 학생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의 장과 교원 :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교장(직무대리 임용자를 포함한다) · 교감 · 수석교사 및 교사
 - 보호자 :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학부모), 친권자가 없는 경우 학생의 후견인, 기타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학생이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 시 징계 또는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학교의 장이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갖추도록 지원해야 하는 제반여건에는 ①학부모 교육상담실 마련, ②도전 행동 학생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구축, ③SPO 및 병원 등 긴급 협력 대응체계 구축 등이 포함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로 이루어지는 학부모에 대한 조언, 상담 요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지도요령

- 단위 학교는 법령과 고시의 범위 내에서 교육 3주체의 책무를 보다 상세화하거나 구체화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지도할 수 있음

참고

• Q&A



고시 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하거나, 학칙 개정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 일부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나요?



학칙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제59조의4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시 해설서의 예시나 법령의 범위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정한 표준안(학생생활규정, 선도규정 등에 대한 시도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더라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관련 세부 지침 및 학교의 학칙에 따라 별도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두거나 일부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 교육청의 지침과 소속 학교의 학칙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제32조(기능)

-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략)

-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및 생활지도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 규칙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제공하고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 서명 운동을 운영할 수 있음

※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학생 문제행동 발생 시 학교조치 이행 동의서 등을 책임 규약에 포함할 수 있음

[학교 규칙 등에 대한 교육·연수 운영 예시]

대상	횟수	방법
학생	연 1회 이상	• 학기 초 학급 단위로 실시하여 학칙과 바른 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함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실시함
교직원	연 1회 이상	• 생활지도 관련 법령, 생활지도의 요건과 예시 상황, 학생 대상 생활지도 • 사전 교육 방법 등을 포함함
보호자	연 1회 이상	•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핸드북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과 기본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 서명 운동이란?〉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 규약이란 학교의 교육 3주체(학생, 교원, 보호자)의 책임과 학교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캠페인 성격의 활동임
- 책임계약 서명운동은 학칙 및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과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법령과 고시에서 부여받은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책임규약 서명운동의 운영 단위 및 시기, 방법 등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구분	세부 내용(예시)
운영 단위	• 학교 단위, 학년 단위, 학급 단위 등
운영 시기	• 학년 초, 학기 초, 특정 교육주간 등
운영 방법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및 캠페인, 결과 공유회 등

• 법률 등에 근거한 교육 3주체의 주요 권리·권한과 책임

구분	권한·권리	책임
학생의 권리와 책임	•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으며(교육기본법 제12조제1항), 학생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받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 • 학생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짐(교육기본법 제3조) • 학생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음(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 •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되고 보호받음(초중등교육법 제17조)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교육기본법 제13조) •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2023.9.27. 교육기본법 제18조의5제1항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 •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함(2023.9.27. 교육기본법 제18조의5제2항 개정) • 교육활동의 범위내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함(2023.9.27. 교육기본법 제18조의5제3항 개정) •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야 함(공교육정상화추진법 제6조) •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5조제1항)
교원의 권한과 책임	•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됨(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한이 있음(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 •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교육기본법 제14조제2항) • 교육자로서 자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교육기본법 제14조제3항)
학교의 장의 권한과 책임	•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이 있음(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8조) •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25조)	•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 •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교육기본법 제14조제2항) • 교육자로서 자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교육기본법 제14조제3항) • 민원처리를 책임져야 함(2023.9.27.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개정)

• 교육 3주체의 책무 규정에 대한 예시

구분	권한·권리	책임
학생의 권리와 책임	•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 학생은 폭력,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과정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 • 학생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를 존중·수용하고 따라야 한다. •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존중해야 하며, 비하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 매일 학교에 출석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수업과 숙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 자녀의 행동발달 상황 등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기를 요구할 수 있다. • 자녀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고, 학칙과 교원의 지도 방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학칙으로 정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확인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교직원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학교장 및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 및 교원의 권한과 책임	• 법적 권한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할 권한이 있다. • 교육활동 중 타인을 괴롭히고 또는 해를 가하거나 비하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찰 등 외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학생생활지도를 벗어난 학칙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학생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과 지도방침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인식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직원이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학생생활지도 전략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학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인 이의제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 교육 3주체의 책무 등을 학교생활 안내서, 교육·연수,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3주체에게 안내할 수 있음

🎓 서식 모두의 학교 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예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② 생활지도 방법

1.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4.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5.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 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4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조문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설

-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됨
 -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음성·영상·문자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 정보 검색·열람 또는 생성·저장하는 행위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활용한 음성 또는 영상 통화, 메시지 주고 받기, 음성 녹음, 영상 촬영, 메시지 검색·열람 등을 포함함
 - 학생이 수업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한 것인지를 적시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허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 ※ 한국어가 미숙한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번역, 음성의 문자 변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교육 목적 사용으로 인정함
 -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도 휴대전화 사용을 구두로 일시 허가할 수 있음

지도요령

-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도 휴대전화로 간주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부득이하게 수업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사용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허가에 필요한 절차, 신청서 및 구비 증빙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학칙의 규정 예시〉

제○조(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표1>의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 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금지) 학부모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

-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교사-학생 간 대화, 학생 간 대화, 학생과 제3자와의 대화 등)을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

☞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예외적 허용) 학생의 개별 학습을 위한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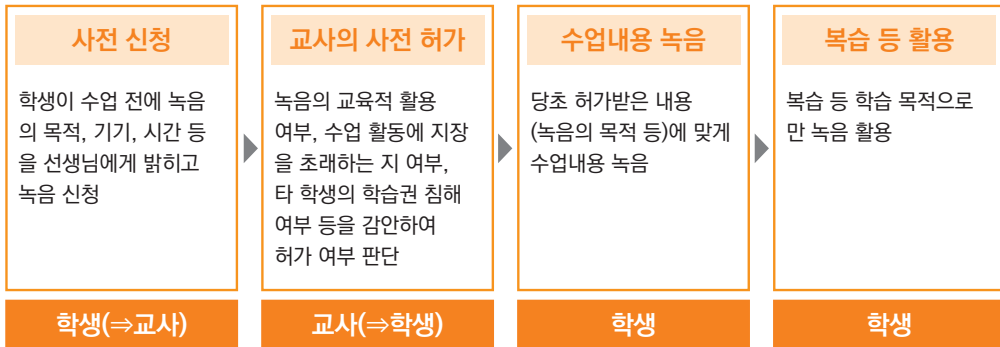
- 학생이 복습 등 개인적 학습, 기타 교육 목적으로 녹음기, 스마트폰 앱(어플) 등을 활용하여 수업 내용과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녹음은 위법이 아님. 다만,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학생이 일방적으로 녹음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사 및 타 학생의 인격권(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아울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교육 목적 등으로 교사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학생이 개별 학습의 목적으로 수업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 전에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허가를 득해야 함. 다만, 교사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도 녹음파일이 허가된 목적 외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녹음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녹음 파일의 무단 배포 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학생의 개별 학습을 위한 녹음 관련 운영 절차(안)]



관련 참고 자료

-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4.7.)
 - 따라서 수업의 평온성 유지 등 학교 생활질서 확보 차원에서 휴대전화 소지 사용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그 제한이 과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업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이
이
이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2장 생활지도의 범위

1 학업 및 진로

관련 조문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해설

-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함

〈행위 예시〉

-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요구
 - 정당한 과제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 수업 중 엷드리거나 잠을 자는 행위
 -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과제를 하는 행위
 -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위
 - 교원에 대한 모욕행위
 - 수업 중 부적절한 행동으로 주의를 분산시켜 원활한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 학습을 위한 모둠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지장을 주어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함

〈소지 금지 물품 예시〉

- 도박 물품(포커 카드, 마작, 화투 등)
-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 휴대용 게임기
-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등

-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함

지도요령

-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지만,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수업권의 범위는 학습권의 보호 및 보장이라는 전제하에서만 행사될 수 있음
- 학습권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성장·발달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에 우선함

[관련 판례]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 교원의 수업권은 교육권의 포괄적 개념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권리(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마278 결정)로 피교육자의 교육받을 권리(학습권)의 보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상의 직무권한임

※ 교원의 수업권은 교육기본법 등의 법령의 범위와 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임

- 대법원 2005다25298 판결 -

참고

-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수업시간 외에 학교관리자 및 담임교사, 교과담임교사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관련 활동*은 생활지도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

* 상급학교 진학 등과 관련한 진로심리검사, 진로탐색, 진로체험, 진로설계 등

• Q&A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은,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학생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진로 및 진학 관련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교원은 학생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은 자신의 개인적 신념, 가치 등이 학생생활지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학생에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보건 및 안전

관련 조문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해설

-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생활지도의 범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각종 안전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사항들이 포함됨
- 학생 자신 또는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행위를 포함한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생활지도 상황 예시〉

- 식습관 등 급식지도
 -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 사이버 중독·감염병 예방 등
- 학생이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가꾸어 나가고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부적절한 행위 예시〉

-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하는 행위
 - 공격성 및 공격적 행동
 -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
 - 가출, 기타 아동·청소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 등
- 학교 안팎에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행동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생활지도 상황 예시〉

- 통학방법, 학교 내 통행 예절
- 위험한 장난감 및 흉기 소지 금지
- 용도를 벗어난 시설물이나 장치의 이용 등

🎓 지도요령

- 교육활동 중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보건과 안전에 위협·위해가 예견되는 학생 행동 전반에 대하여 생활지도 가능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에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함

🎓 참고

-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학교의 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

〈「학교안전법」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 ▶ ①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인성 및 대인관계

관련 조문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인성 : 학생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 대인관계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 간 또는 학생과 교원 등 타인 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관계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이란 전인적 인격체를 완성하기 위해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미함

〈품성 및 예절 예시〉

- 친절, 봉사
 - 협동, 근면, 성실
 - 인사하기, 공손하게 대하기 등
-
-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비록, 교육활동 중이 아닌 시간(하교 시각 이후)에 발생한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의사소통은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교사가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활동 중에 생활지도가 가능함

〈부적절한 의사소통 행위 예시〉

- 학생 간의 욕설 및 비방
- 특정 학생을 대화에서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행위
- 교직원에 대한 반말, 욕설 등의 행위
- 기타 상대방이 모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의사소통 행위 등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지도 가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하는 것,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바르게 대응하도록 지도하는 것,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사건을 파악하는 등의 지도 행위를 포함함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음

🎓 지도요령

- 학생 간의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신고·접수된 이후에는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리를 하고, 경미한 경우에만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지도를 할 수 있음
 - 경미한 경우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관계기관 및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참고

• Q&A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로 발생한 절도, 도박, 폭력행위와 같은 범법 행위,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품행장애 등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연계하고, 정신병리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그 밖의 분야

관련 조문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교육활동 중 학생의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함
- 고시 제8조의 그 밖의 분야는 고시 제5조부터 7조까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거나 오해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생활지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임
-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다문화가족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활동이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활 지도를 할 수 있음

〈「장애인복지법」·「다문화가족법」〉

-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 「다문화가족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⑤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교육적 이상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 3주체가 공유하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단위 학교가 추구하는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교복 착용 등 복장에 관한 사항과 바람직한 용모 등을 지도할 수 있음

〈복장 및 용모 지도 사례〉

- 학교가 정한 교복을 미착용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
 - 특정 종교·인종·집단에 대한 혐오를 과도하게 표현하는 복장을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
 - 과도한 노출 등 학교가 추구하는 문화에 부적합한 복장 착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 등
- 학생의 비행 및 범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생활을 저해하고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반사회적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예방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그 밖에 단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 교육 3주체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내용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 밖의 학칙으로 규정하는 생활지도 사례〉

- 학교시설물 이용 관련 규정
-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 예절
- 학교 내 개인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지도요령

- 학교가 추구하는 문화에 부적합한 복장과 용모에 대한 사항은 가급적 교육 3주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학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적 규범을 어긴 심각하고 명백한 학생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해서는 학교 지도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수사 기관 등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협력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생활 관계 전체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학생의 생활 관계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짐

[관련 판례]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와 범위

-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품과 행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

3장 생활지도의 방식

1 조언

관련 조문

제9조(조언)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해설

-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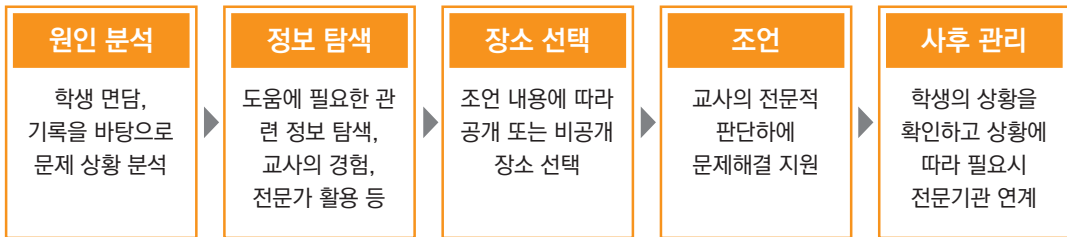
[조언의 요건]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여 학생과 보호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등 언제든지 조언이 가능함

〈조언의 상황 예시〉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습·진학 등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 면담 또는 관찰 시 교우관계·학습 등에 대한 어려움을 발견한 경우
-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검사 결과 학생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학생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 문제행동 개선 등을 위해 학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부터 검사·상담·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생 또는 보호자가 가정 환경 및 취업 등에 대하여 교원에게 정보 제공, 해결 방안 제시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 해결책을 제시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반복적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등

[조언의 절차]



🎓 지도요령

- 학생과 보호자에게 문제 상황을 설명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음
-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돕고, 교육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행동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세하게 조언하되 실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 좋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생활과 관련된 조언의 내용은 상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조언 과정 중에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등의 징후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해야 함
- 공개적인 조언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평가나 비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Q&A

Q

‘조언’에 해당하는 특정 요건이 있나요?

A

조언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로 어느 때든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조언은 학생생활지도 중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특정 요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교육활동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가장 광범위한 생활지도 방식입니다.

Q

‘성장을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조언’이란 무엇인가요?

A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담긴 조언을 의미합니다. 학생에 대한 부정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담겨야 올바른 조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관련 조문

제10조(상담)

-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 학생생활지도 방식으로서의 상담*은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소통의 과정을 의미함
 - * 진로 체험의 날, 진학 설명회, 학부모 상담 주간 등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행사 및 일정에 의해 진행되는 상담은 포함하지 않음
 - 상담은 학생의 문제 예방, 발달과 성장, 문제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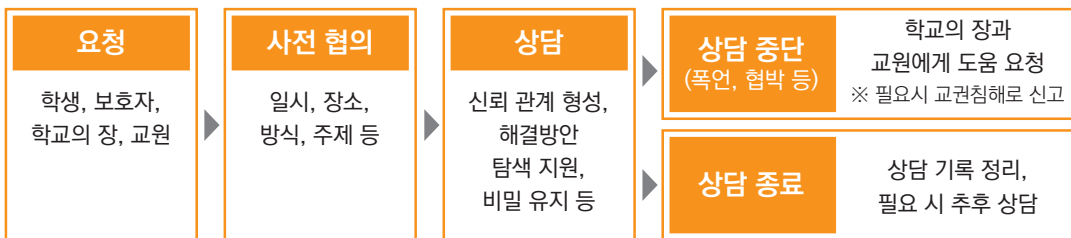
[상담의 요건]

- 학교의 장 또는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상호 간에 학습, 교우관계,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상담의 목적, 주제, 방식(유선, 대면, 서면 등), 일시*, 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학부모 상담은 수업 시간 외, 근무 시간 내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임
- ※ 유선으로 상담을 진행할 경우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 '착신전환' 설정 확인 필요

〈상담 거부 상황 예시〉

- 학생이 긴급한 사유 없이 수업 시간 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사전연락 없이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 개인의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직장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에 SNS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폭언 또는 민원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강요하는 경우

[상담의 절차]



[상담 장소]

-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 관계 형성 및 상담내용 비밀보장 등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함
- 긴급 지원 요청을 위한 비상벨 시스템 및 전화기, 상담 시간 확인을 위한 알람 시계, 녹음* 장비 등 상담 시 교원의 안전 등을 위한 시설 등 구비 필요(학교의 장은 관련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지원)
* 녹음은 필요할 경우 사전 고지 및 상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경우에 가능

🎓 지도요령

- 학생에게 교사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학생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탐색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담 중 대화 내용이 주변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담 내용이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함
※ 단, 상담 중 아동학대, 성폭행, 학교폭력 등의 사실이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관련 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함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상담하는 경우 필요시 보호자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음
- 보호자와의 상담인 경우에는 상담 시작 전에 핵심 주제, 기대 목표, 상담 시간 등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음
- 필요한 경우 학교관리자나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음
-교원이 학교관리자와 공동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관리자는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함

참고

• Q&A

Q

상담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나요?

A

공식 요청에 의한 상담인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생의 발달 과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의 가벼운 상담인 경우에는 개인 메모 형태로 핵심만 기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상담을 녹음 및 녹화하려는 하는 경우에 허용해야 하나요?

A

사전에 녹음 및 녹화가 허용된 장소 및 공지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담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녹음 및 녹화는 허용됩니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 및 녹화가 진행됨을 인지한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안전을 위해 상담실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영상 녹화는 가능합니다.

Q

제10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상담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형법 제24조), 상담자, 내담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재산 등에 대한 급박한 침해 또는 위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형법 제20, 21조), 법적으로 상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형법 제19조) 등에 해당합니다.

Q

제10조제6항과 관련하여 '직무범위'를 넘어서 상담은 무엇인가요?

A

상담 관련 직무범위는 수업 및 학생 지도와 관련된 영역 등이 해당됩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 상담은 교사가 관여하지 않는 학생이나 학급 또는 본인이 담당하지 않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요구 등이 있습니다.

Q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상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제6항, 제7항과 같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을 때, 직무 범위를 넘어서었을 때, 근무시간 외에 상담을 요청했을 때, 보호자의 폭언 등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때 등이 있습니다.

Q

상담 실시를 위한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상담 요청서 작성·제출', '상담 사전 신고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상담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참고

교원과 보호자의 교육상담 가이드라인

■ 일반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을 하는 경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예의를 지키고, 사용하는 구어와 문장은 경어를 사용한다.
-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내용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사전에 상호 간에 상담 일시 및 방법 등을 협의해야 하며, 상담은 상호 협의된 시간과 방법에 따른다.
- 교원과 보호자는 교원의 근무 시간 중 상호 협의된 시간 내에서 상담을 한다.
- 교원과 보호자는 교원이 수업중인 시간에 상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면 및 전화 상담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사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대면 상담은 안전 등이 확보된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자는 전화 상담을 하려는 경우, 학교의 전화를 통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교원이 동의한 경우 교원의 개인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 문자 및 SNS 상담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서는 아니된다.
- 문자 및 SNS 상담은 교원의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교환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교원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문자 또는 SNS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주고 받은 문자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 이메일 상담 원칙

- 교원과 보호자는 상대방의 이메일에 성실히 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이메일에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호자가 이메일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메일에는 상담 요청자 및 용건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 간에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동영상 등을 이메일에 포함하여 보내서는 아니 된다.

■ 상담의 제한

- 교원은 상호 협의된 상담이더라도, 상담하려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상담을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①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경우
 - ②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③ 교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
 - ④ 교원 등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 ⑤ 교원의 직무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 ⑥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요구하는 경우
 - ⑦ 상호 협의된 시간 및 방법을 벗어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⑧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책무

- 학교의 장은 교원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 활동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 교원은 상담을 위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주의

관련 조문

제11조(주의)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등에서 학생에게 지적과 경고를 할 수 있음
- 교원이 학생에게 지도할 수 있는 주의의 종류에는 지적과 경고가 있음

[주의의 요건]

- 자신과 타인의 정서·신체적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을 알리거나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를 줄 수 있는 상황 예시〉

- 학생이 수업 중 교사의 사전 허락 없이 녹음기, 전자기기, 화장품 등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거나,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학생이 봉사 시간(청소 시간 등)에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학생이 지나친 장난을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교실, 급식실, 특별실 등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위반하려고 하는 경우
- 학생이 욕설과 비속어 모욕적인 말 등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 학생이 신체적인 폭력을 사용하려 하는 경우 등

지도요령

- 주의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한 즉시 시행하되, 문제행동의 정도와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의를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이 주의를 받는 목적과 이유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관련 판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주의

▶ 동아리 도우미(학부모)가 학교 합창부 연습실에서 아동이 자리를 몰라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물어보자 다른 아이들과 달리 아동에게만 “빨리 앉아”라고 소리치며 위협적으로 말하여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합창부 담당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합창부원들을 조용히 시키거나 연습에 집중하도록 할 목적이 확인되어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광주고법 2021노1162 -

-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주의를 줄 경우 경멸, 비난, 조롱, 타인과의 비교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관련 판례] 공개적인 장소 및 주의 반복

▶ 교사가 아동A(7세)가 작성한 일기를 검사하던 중 자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동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들도록 크게 읽은 후 아동에게 “내가 뭘 했다고 말 공격해? 애들아 선생님이 말 공격했니?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라고 말하고, 아동B(7세)가 반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때면 반 친구들로 하여금 아동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

⇒ **(학대 인정)**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피해아동들 4명) 등 고려

-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3627 -

🎓 참고

- 학생의 문제행동 수준

[‘현장교원 정책TF팀 연구보고서(‘23.8.)’에서 제시한 학생 문제 행동 3단계]

단계	설명
1단계 경미한 문제행동	•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지만 교육활동을 중단할 정도는 아닌 수준의 활동 ※ (예시) 산만한 수업태도, 잦은 소음, 시간 어기기 등
2단계 심각한 문제행동	• 학습 분위기를 상습적으로 저해하거나 교육활동을 불가하게 하는 수준의 행동 ※ (예시) 교사의 지시 불이행,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교실 내 자리 이탈, 핸드폰 무단 사용, 학습활동 거부 ※ 경미한 문제행동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문제행동에 준하여 조치할 수 있음
3단계 매우 심각한 문제행동	•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 즉시분리가 필요한 수준의 행동 ※ (예시) 신체폭력, 심각한 언어폭력, 성폭력, 흉기 소지 등의 위해, 교실이나 학교 이탈, 이탈 후 배회, 그 외 극단적으로 위급한 상황 등

※ 매우 심각한 문제 행동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연계가 필요함

4 훈육

관련 조문

제12조(훈육)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조언, 주의 등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긍정적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학생에게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보관을 할 수 있음

지도요령

- 생활지도를 위해 훈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함

[관련 판례] 인격이 존중되는 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22두39185 -

- 학교의 장 및 교원은 수업 방해 등 문제 학생 행동을 훈육하기 위하여 법령과 학칙 내에서 적절한 교육 방법을 선택할 권한이 있음
※ 학교·학급의 학칙과 교육환경, 학생의 유형·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생활지도 방법의 적절성 판단

[관련 판례]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선택

▶ “학급 담당교사는 수업 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하여 시행한 교육 방법이 위와 같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학교 및 학급의 교육환경, 학생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채택한 교육 방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교육방법이 당해 학생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에 해당되거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다95134 -

- 학생들을 훈육할 경우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 및 체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관련 판례] 폭언 및 폭력의 금지

▶ 교사가 아동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쓸모없는 아이야, 너 같은 건 여기 없어도 돼,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려"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아동의 책가방과 신발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아동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복도에서부터 계단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신체적 학대

⇒ **(학대 인정)** 비록 훈육의 필요성이 있었고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태양 자체로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교사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아동의 나이, 교사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65 -

가. 지시

- 지시는 학생의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적 조치를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과제를 부여하는 지시를 할 경우 학생의 수준에서 수행이 가능한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완료 이후 그에 따른 교육적 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지시의 요건]

- 학생의 학업과 진로의 성장 및 발전, 안전한 학교생활 등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시 상황 예시〉

- 교육활동 중 친구와의 지나친 잡담·장난을 중단하도록 지시
- 수업 시간에 늦어 일과 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
- 등·하교시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여 통학하도록 지시
-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
-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을 중지하도록 지시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해당 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적당한 장소로 이동을 지시
- 수업과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정당한 질문에 대한 말대꾸, 비아냥 등 중지 지시
- 과제를 요구한 기간 또한 시간 내에 작성하지 못한 경우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과제를 완료하도록 지시 등

지도요령

- 지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안전사고 예방, 건강 등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관련 판례] 학생의 건강을 위한 정당한 지시

▶ 교사가 월요일마다 아동들에 대하여 소변검사 키트에 의한 소변 검사를 받게 해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지속적으로 흡연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교사가 아동들의 흡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흡연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를 하기 위하여 소변검사를 실시하였던 점, 소변검사는 소변 중 코티닌량을 측정함으로써 흡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고 소변검사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이는 점, 소변검사가 통상적인 건강검진과 같이 아동들이 직접 소변을 종이컵에 받아 이를 교사에게 제출하면 교사가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 소변 검사로 아동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나 소변 검사를 통한 흡연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지도로 청소년의 흡연 확산 방지 및 건강 보건 증진의 목적 달성 기대됨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노406 -

- 지시로 인한 과제 수행시에도 식사, 화장실 이용 등 기본적인 쉬는 시간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참고

• Q&A



학교급별, 학생별 지시는 어떻게 달라야 하나요?



학교급별, 학생별로 성장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한 최고 전문가는 현장 교사입니다. 개별 교사별로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학년 협의회 또는 전체 교사 협의회를 통해 학년 규정, 학교 규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당한 지시와 부당한 지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식적으로는 학칙 등에 언급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교사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가 학생의 지적·정의적·행동적 능력을 함양하여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나. 제지

관련 조문

제12조(훈육)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해설

-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행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상황에서 구두 제지 및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음
- ※ 물리적 제지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처럼 소극적 수준의 행위,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이 적극적인 행위가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 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실시할 수 있음

[관련 판례] 정당한 물리적 제지

▶ 교사가 아동이 같은 학급 여자아이들과 싸워 혼계하던 중임에도 본인 자리로 돌아가자 쫓아가 아동의 왼쪽 팔뚝 부위를 세게 잡아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찰과상 등을 가해 신체적 학대

⇒ **(학대 불인정)** 교사는 아동들을 학교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훈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아동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말로 제어가 되지 않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그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학대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대전지법 2021고정992 -

- 교육활동 중 구두 제지는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별도의 학교장 보고,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음
-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즉시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됨. 물리적 제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의 위해를 감소하기 위함이므로, 과거 훈육을 위해 일상적인 상황에서 실시되었던 체벌과 무관함

[제지의 요건]

-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 *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제지 상황 예시〉

- 복도 및 계단 난간 등 위험한 장소에 올라가거나 뛰는 경우
- 도구 등을 활용하여 자해를 하는 경우
- 공구(실습실), 화학물품(과학실 등),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휘두르는 경우
- 인화성 물질과 화기를 이용한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 마약성 물질 등 위험한 물질을 흡입하는 경우
- 타인에게 정서적·신체적 폭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가하는 경우 등

지도요령

- 구두 제지를 할 경우 감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구두 제지 시에는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짧고 명료하게 실시하여야 함
- ※ 제지 시 호루라기, 전자 호루라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

- 물리적 제지를 하기 전에 먼저 주위 다른 학생을 정확히 지정하여 교장, 교감, 주변 교실의 교사들을 불러오도록 지시할 수 있음
-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한 경우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물리적으로 신체를 제지할 경우에는 학생의 부상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용하여야 함
- 위급한 상황시 교사는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도록 하여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녹화, 녹음한 자료가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관련 판례] 생활지도 상황 촬영의 필요성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 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 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 대법원 2020다227455 -

참고

• Q&A



학생을 훈육할 때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 제지 또는 분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는 조언이나 상담 또는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훈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훈육 전에 실시하는 조언이나 상담, 주의는 사전에 이루어지면 충분한 것으로 반드시 당일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는 구두 제지를 바로 할 수 있고,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곧바로 물리적 제지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제지가 발생된 이후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의 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선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안내 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물리적 제지가 발생한 일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 등

아울러, 학교의 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중 물리적 제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원 및 직원, 외부 관계기관 등 지원인력 지정 및 대응 절차 등을 마련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 분리

관련 조문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 분리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함
※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각 교실에 비상벨 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훈육으로서의 분리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지도 방법으로 징계로 인한 분리, 출석정지 등과 는 다름
※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에 따른 '학생 분리'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제8조(출결상황)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에서 별도의 '분리학생 조치 현황 대장' 등을 통해 분리 학생의 학습 장소를 기록·관리 하여야 함

[분리의 요건]

- 학생이 수업 중 잡담, 장난, 고성, 수업 거부, 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거나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분리 조치 학칙 규정 예시〉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 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 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 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 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 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에게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 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 의 시간에 특 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 여 교육활동을 방해 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 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 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 여 실시할 수 있음				

지도요령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 도구 등) 등을 확인해야 함

[관련 판례] 학생 분리 환경 고려 및 방임

▶ 피해 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0시 25분 경 피해 아동을 복도로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2시경까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 **(학대 인정)**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한 것으로 보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경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37 -

-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음

[관련 판례] 분리 시간 및 조건의 적절성

▶ 교사가 피해아동을 '컵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약 40분간 책상에 혼자 엎드려 있게 해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적절하고도 근본적인 훈육 방식을 강구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0고정520 -

▶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피해아동을 복도로 내쫓은 후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시키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여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피해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고, 그 사이 교실에서는 자습이 이루어졌을 뿐 교사가 적극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들이 복도에 서 있는 외 다른 신체적 또는 정서적 부담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아니었음

-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707 -

-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학생 분리 지도 공간 안전 확인 사항〉

- 교실 바닥 및 벽체 부착물의 안전상태
- 출입문 레일 및 손 끼임 방지 시설
- 창호 안전상태(유리, 추락방지 보호시설 등)
- 칠판, 사물함, 책걸상 상태
- 안전수칙 및 대응 요령 게시 상태
- 위험한 물품, 교구 등의 유무
- 지도인력의 학생 안전 지도 관리 여부 등

- 학생이 분리 중에 지켜야 할 행동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행동 수칙(과제 등)을 분리 장소에 게시하여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관련 판례] 사전 안내 후 분리 필요

▶ 교사가 피해아동을 혼내는 과정에서 교실 밖 복도로 피해아동을 쫓아내고 명심보감을 쓰는 벌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피해 아동만 쫓아내거나 명심보감을 쓰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행해진 행위로 차별적 행위라 보기 어렵고, 아동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감정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학대라 보기에 무리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5고단2572 -

▶ 교사가 아동이 손을 들지 않고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에게 '너 감금이야'라고 말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

⇒ **(학대 불인정)** '수업 전에 떠들거나 수업 중에 잘못을 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미리 말한 다음 아동들을 30분~1시간 30분간 교실에 남게 하였고, 교실 안에서 이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은 점, 다른 아동들 진술에 따르면 교실 안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고려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단554 -

-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교실 밖 일시적 분리조치를 위한 별도 공간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음
※ (별도 공간 예시) 교무실 · 생활지도실 · 학년실 등의 실내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학생 수업 시간 중 활용되지 않는 학부모 상담실 등의 겸용 가능한 특별실 등

참고

• Q&A

Q

교실 내 지정된 위치에 이미 다른 학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교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지정된 위치 외에 다른 위치를 지정하여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업중 교실 내 분리 관련 인권위 권고

▶ 통상적인 앞자리 배치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에도, 집중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7일 동안 통상적인 자리가 아닌 교탁 옆에 홀로 배치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구분 짓게 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서적 체벌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학생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 2020. 6. 30. 19진정0807000 결정 -

Q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내 분리를 했음에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런 경우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학칙에 의한 징계도 가능)

Q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별도 장소에 분리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바로 인계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또는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고시 제12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만약 분리 조치한 학생에 대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여 요청하였으나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A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은 일과 중 매교시별 수업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모든 수업이 종료한 일과 후의 시간을 의미하며, ‘특정 장소로의 분리’는 교무실, 특별활동실 등 분리 조치를 위해 학칙으로 정한 별도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만약 학부모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였으나 반복적으로 학부모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에 근거하여 보호자가 정당한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학교의 장은 학교 상황을 고려한 교실 밖 분리 학생 지도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계획에 따른 업무 분장 등에 따라 안전사고 관리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A

학생 분리 지도를 위한 절차 및 장소, 인계 또는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물품 분리보관, 학생 분리지도 등을 위한 대장의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요?

A

생활지도에 따른 각종 대장 등 문서의 총괄 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다만, 각 문서의 실무적인 관리 주체는 학교에서 정한 업무분장 및 위임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1 ○○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예시)

〈○○학교〉

일자	2023. 11. 1. (금)		확인(서명)	특별실담당자
내용	교시	수업담당교사	분리사유	대상학생 (학번,이름,누적일)
	1	장○○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10101 안00(5/1,7/5)
특이 사항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 서식2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예시)

보호자님께!

○○○○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2023년 00월 00일

○○○ 학 교 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서식3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예시)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장

서식4 일시 분리 지도 추진 절차(예시)

절차	담당	주요내용
사전준비	학교장 및 교직원	• 학칙 개정, 수업 방해 학생 일시적 분리 지도방안* 마련 * 분리 장소, 시간, 학습지원 방법, 실시 절차 등 • 생활지도 고시 내용 및 학칙 개정 내용 공표·홍보
교실 내 분리	수업교사	• 별도 분리 좌석 및 지정 위치로 이동 지시 • 이동 시 자신의 학습자료(교과서) 등을 지참하여 지속적 수업 참여 • 학생의 행동 교정 시 원래 자리로 복귀
교실 밖 분리	교장, 교감 등 지도교사	• 교실 옆 복도로 분리 ※ 가능한 경우 복도에서 수업내용 청취(또는 별도 과제 부여) • 별도 분리 장소(성찰실 등)로 이동 ※ 수업교사는 비상벨 시스템, 내선 전화 등 학교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교직원 등에게 분리 요청 • 분리장소(성찰실 등)에서 대체 학습 과제 제시 및 수행 ※ 학교장에게 분리 사실 및 학습 현황 보고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 (가정학습)	학교장 (교감 등)	• 학부모에게 학생 수업 방해 사유* 통보 및 인계 요청 * 교실 밖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 가정에서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가정학습 학부모 확인서 전달
후속관리	관리자, 담임교사, 교과교사 등	• 분리조치 학생 임장 지도 • 분리 장소 안전상태 점검 • 필요시 학생 상담(결과 누적기록 관리 등) • 분리학생 상담 및 치료 권유
	보호자	• 전문가 상담 및 치료 권유 시 적극 협조 • 학부모로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책임 의무 이행 • 가정학습 확인서 작성 및 제출

라.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

관련 조문

제12조(훈육)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⑩ 교원은 제6항제3호·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음

[관련 판례] 학생 물품 분리 보관

- ▶ “원고는 2019. 10. 22. ①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실 밖 복도에 앉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적발된 사실, ②생활지도담당교사는 원고에게 휴대전화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교사를 쳐다보거나 대답하지도 아니한 채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였고, 이에 해당 교사가 원고에게 ‘생활지도 교사로서 지도를 하는 것이고, 지도를 듣지 아니하면 지시 불이행이 된다.’는 취지로 경고하면서 휴대전화의 제출을 2회 더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③해당 교사의 연락을 받은 학생부장 교사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중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부장 교사가 원고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중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이런 분이셨구나. 학생들이 선생님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하는데’라는 취지로 말한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는 2019. 11. 5. ‘수업 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학교 학교생활규정 제8조 제2항, 제3항, ○○중학교, 학생생활협약

1. 제3항, 강원도교육청 교권침해사안 처리규정 제4조 제4호에 따라 교내봉사 2시간(교내환경정화활동 1시간, 사과편지작성 1시간)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학교 내의 봉사’를 명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학교 내의 봉사’에 ‘심성교육’이 포함된 이상 ‘사과편지 작성’도 징계내용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 2022두39185 -

-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생활규정을 정할 때 학급 구성원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급우들과 동등하게 고려하여야 함
 - 다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학급생활규정에 대한 조정 또는 추가적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교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음

[물품 조사 및 분리보관의 요건]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물품 조사 상황 예시〉

- 담배, 라이터, 술, 화학약품, 레이저포인터, 인화성 물질, 흉기 등의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학교폭력, 비행(도박, 오토바이, 절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등에 사용될 수 있거나 사용한 물품에 대한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 그 외 학칙에서 금지한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등

🎓 지도요령

- 학생의 물품을 조사하고 분리 보관하는 과정에서 물품 손상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건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여러 학생으로부터 비슷한 물건을 분리 보관하는 경우, 학교는 물품의 주인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과 동성인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할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을 제정할 때 금지된 물건과 이후 절차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물품 조사 및 분리 보관시 그 사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함
- 생활지도를 위해 학생 물품을 조사할 때에는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없음
- 학생의 물품을 조사할 때,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참고

• Q&A



2교시 쉬는 시간에 약 다섯명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나온 뒤 흡연 정황이 신고되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요?



흡연 정황이 신고 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 화장실을 사용한 학생들이 흡연했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물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확인된 물건 중 폭발물, 마약류 등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라면 학교가 보관을 해야 하나요?



현행법상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으로 분류되는 물건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총포화약법 제2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고시 제12조 제9항을 근거로 학용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나요?



학생이 가위, 칼과 같은 학용품을 위험하게 사용하는 경우 교원은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고시 제12조제9항 1호에 따라 분리보관 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예시

요건		분리시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되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112 신고 시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기준

① 법령과 학칙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학교의 장 및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학칙 및 그 외 관련 법령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③ 학급 규칙 및 교육주체 간 협약

④ 교원-학부모와의 사전 협의 사항 등

※ 출처 :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3.)

 서식1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예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학교장

🎓 서식2 **물품 폐기 확인서 예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5 훈계

관련 조문

제13조(훈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해설

- 훈계는 학생의 잘못된 의지와 태도를 바로잡아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 의식을 함께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임

[훈계의 요건]

- 학생생활지도에 따른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훈계의 예시〉

- 수업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에게 수업 시작 전 교과서 등을 미리 준비해 착석하여 기다리도록 해야 할 경우
- 자신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본 등에 대하여 글로 작성해보도록 해야 할 경우
- 친구의 우유를 쏟은 학생에게 청소도구를 활용하여 닦도록 해야 할 경우

※ 훈계의 과제 부여(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의 교육적 지도를 위해 필요에 따라 선택 또는 병행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단 특정 행위에 대해 벌을 주기 위한 '벌청소(지각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화장실청소를 시키는 것 등)'는 해당되지 않음

🎓 지도요령

- 훈계는 학생의 잘못에 대한 ‘응징’ 또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을 수정해주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함
- 평소 사제 간에 신뢰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훈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감정의 기복에 따라 훈계하거나 일회적인 훈계보다는 학생의 잘못이 수정될 때까지 장기적인 훈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훈계 시 수치심 주기, 경고와 위협, 회유, 비교, 비난, 평가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대안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시 교원이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하며 지도해야 함

🎓 참고

• Q&A



교무실, 화장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교실을 학급 규칙으로 정하여 별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훈계에 포함되나요?



징벌 목적의 별청소는 훈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행동과 직접 관련(예: 친구의 음료수를 바닥에 엔지른 경우, 벽에 낙서를 한 경우 등) 되어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훈계 조치로서 청소와 같은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급 전체 학생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학급 내 환경 정리 등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생활지도 목적의 청소 지시(제12조제2항)는 가능합니다.



반성문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권위 권고를 위반하는 사항인데, 훈계 시 학생들에게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나요?



학생에게 강제로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반성문과는 달리 성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기분을 돌아보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반성문과 성찰문 차이) 반성문은 어떤 행위에 대한 외부적 판단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그 판단을 인정하고 맞추도록 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 성찰문은 학생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생각하여 돌아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서식1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예시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년 월 일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6 보상

관련 조문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모범적인 행동과 바른 인성 함양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음
- ※ 교원은 학급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보상 체제를 운영할 수도 있음

[보상의 요건]

-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촉진 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의해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거나 행동이 교정되었을 경우

〈보상 상황 예시〉

- 수업 시간 등 교육활동 중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를 보여준 학생
- 교원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바탕으로 교직원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인 학생
- 학교 외부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으로 학교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학생
-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른 인성을 함양하거나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학생
-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제시 등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
- 노력을 기울여 이전에 부족한 점을 개선했거나 발전한 학생 등

지도요령

- 생활지도에 대한 보상은 학력 수준 또는 수상 실적과 관련 없이 바람직한 행동과 인성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어야 함
- 보상으로 인해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여야 함
-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는 지나친 고가의 물품, 상품권, 기타 학생에게 부적합한 물품은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음

4장 기타

1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관련 조문

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해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규칙과 학급생활규정에 따라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 의식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함
-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지닌 장애의 특성으로 학교규칙 또는 학급생활규정을 다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여야 함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예시〉

-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쉬운 글 또는 그림이나 사진 등 시각적 단서로 제공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점자, 확대 문자, 수어, 자막 등을 활용
 - 수업 참여를 목적으로 음성-자막 변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 활용 허용
-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분리·거부 등 차별적 생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시 학교와 가정, 사회 간 연계 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이상(학기별 1회 이상 권장) 실시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담임교사, 교과 담당 교사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도 방법, 긍정적 행동 지원, 보조공학기기 활용, 통합학급 운영 등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와 특성,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1~3명 감축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해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교원이 동일한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개별화교육 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 단, 일상적인 생활지도로 충분히 가능한 사항까지 개별화교육계획에 일괄적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학교의 장은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행동중재지원단의 지원을 받거나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행동중재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교수, 교육전문직, 특수교육교원(행동중재 관련 연수 이수 또는 자격 소지 교사 등), 치료사, 상담교사(상담사), 의사 등

- 학교의 장은 장애 유형·정도 및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행동의 유형과 심각성 수준에 따른 개별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학교 또는 가정 방문, 교사, 보호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학생의 행동 중재 지원 정도에 따라 시도교육(지원)청 행동중재지원단, 전문기관 및 가정 연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시, 대상 학생의 결함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강점을 인식하여 긍정적 역할 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유의 사항]

-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급에서의 문제행동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에 따라 별도 공간에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의 안전과 건강,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급이 임의적 분리 조치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관련 조문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이 고시에 근거하여 생활지도를 하였음에도 학생이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학생 및 피해교원에 대해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는 「교원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교의 장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8조)

-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는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제15조제2항)

-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응하여 교원의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를 말함.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관련 법령

▶ 「교원지위법」(2023.9.27. 개정·공포 예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교육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생략〉

- 교원은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칙에 근거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음

지도요령

-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학칙에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의 불이행 및 거부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학칙 규정 예시〉

제○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참고

• Q&A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원이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이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였는가의 판단은 학생의 특성과 지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지도 교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이의제기

관련 조문

제17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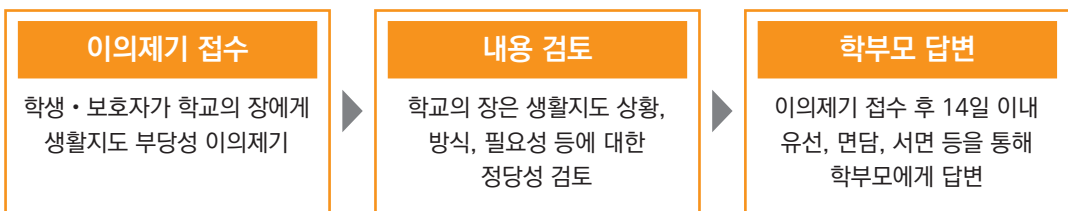
-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학교장에게 14일 이내에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하여 관계 교원으로부터 생활지도가 이루어진 상황, 지도 필요성, 지도 방식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
- 동일한 내용의 이의제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의 장은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지도요령

- 이의제기의 접수 및 답변은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개별 교원이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단위 학교에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관한 이의제기는 관련되는 지도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을 교육 3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참고

-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 개요



• Q&A



이의제기 및 답변 기한인 “14일 이내”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다만, 14일째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까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 (근거)「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

4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조문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설

-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다음의 사항과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 ① 생활지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8조(그 밖의 분야) 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생활지도의 방식과 관련하여 제12조(훈육)제6항에 따른 분리 지도시 제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제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에 따른 ‘분리 장소 ·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
 - ③ 생활지도의 방식과 관련하여 제12조(훈육)제9항(학생 물품 분리 보관)에서 규정한 학생이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물품과 물품 분리 보관 절차·기간 등에 관한 사항
 - ④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에 따른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지도요령

- 고시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학교 마다의 여건과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확일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학교 실정과 교육3주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학칙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그 제정 절차도 법령 및 학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 학교의 장은 -----〈생략〉-----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4항).

참고

-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학칙 규정 예시

제0장 학생생활지도

제0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8조제3호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1. 신체의 피부를 뚫어 장신구를 삽입하는 피어싱의 금지에 관한 사항
2. -----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함〉 -----
3. -----

제0조(교실 밖 분리 방법 등)

생활지도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의 분 리는의 분리는 <별표1>에 따라 지도한다.

제0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 ① 학생은 <별표2>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 ③ 교원이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때에는, 지도 교원의 감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지도시간 이내로 보관하고, 지도시간이 종료 되면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 교원이 제2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물품을 분리 보관 지도를 하는 경우, 교원은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분리한 물품을 인계하고 지도일시, 물품명·사양, 지도사유를 ‘물품 분리보관 기록부’에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안전한 곳에 3일간 보관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보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전이라도 보호자에게 물품을 반환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3일간 분리 보관한 물품을 보호자가 분리 보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받도록 알려야 하며, 보호자가 기한 내에 반환받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제0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조(○○○○)

----- <그 밖에 학교에서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

 별표1 생활지도고시 제12조제6항 제3호 및 제4호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 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 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 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 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별표2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순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순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도색잡지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2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3	블루투스 이어폰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4	부탄가스, 본드	4	해당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5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6	...	6	...
7	...	7	...
8	...	8	...

5 재검토기한 및 부칙

관련 조문

고시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호, 제12조제6항 및 제9항, 제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개정 예정)**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해설

-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재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3년 주기로 현장 교원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종합 검토될 예정이며, 긴급히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기한과 관계없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학칙에 관한 특례’ 규정은 이 고시가 23.9.1일자로 시행·공포됨에 따라, 고시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학칙으로 미리 반영하지 못하는 법체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임
 -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학칙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이 해소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도요령

- 학교의 장 및 교원은 이 고시의 시행 과정에서 고시의 적절성 등을 수시로 검토·기록하여 재검토기간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학교여건 및 학생실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정하고 내부 결재 결정 과정을 거쳐 시행
- 아울러,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학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연구진

신태섭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홍미영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현정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이승민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원)

연구협력관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김정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
길경섭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사)
장현창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주무관)

집필진

최현주 (울산대학교 교수)	이상신 (덕소초등학교 교사)
황혜영 (경기대학교 교수)	박석경 (잠일고등학교 교사)
곽소영 (인천중산초등학교 교사)	안가윤 (동일공업고등학교 교사)
남미영 (서울명덕초등학교 교사)	이진희 (대전대신고등학교 교사)

검토진

조재범 (보라초등학교 교사)	임동선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
황수진 (이음초등학교 교사)	남인영 (서울지향초등학교 교사)
황유진 (시흥매화고등학교 교사)	고요한 (인천해원초등학교 교사)
장은미 (충남설화고등학교 교사)	김도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관)
현진이 (서울수서초등학교 교사)	여인경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발행처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발행일 | 2023.09.27.

디자인 | ECC 통합커뮤니케이션센터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